산업통상자원부

# 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| 보도 일시 | 2023. 2. 24.(금) 15:00 | 배포 일시 | 2023. 2. 24.(금) |
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무역안보정책관<br>무역안보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김영만 (044-203-483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서현우 (044-203-4836) |

##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

### - 대(對)러시아,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-
### -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('22년도) 반영 등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2.24.(금) **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**(이하 고시) **개정안을 행정예고**(2.24~3.16) 하였다.

* 산업부 홈페이지 참조
: http://www.motie.go.kr/motie/ms/ll/adminiStration/bbs/bbsList.do?bbs_cd_n=138

□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(붙임 참조)

**< ❶ 對러시아,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확대 >**

○ **對러시아·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**를 위해 무기 전용(轉用) 가능성이 높은 **산업기계, 철강·화학, 자동차,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**(기술 8개 포함)을 상황허가* 품목에 추가(現 57개 → 고시 시행 후 798개)하였다.

* **상황허가** :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,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

○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,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·벨라루스 수출은 **원칙적으로 금지**되며, **일정한 요건***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**사안별 심사**(case by case review)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.

* ①고시 시행 전 旣계약분 수출시, ②100% 자회사向 수출시 등



**< ❷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('22년도) 반영 >**

○ 우리나라는 **4대 국제수출통제체제***의 회원국으로서, '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**전략물자**** **신설, 삭제 등 변경사항**을 반영하였다.

* WA(바세나르체제), NSG(핵공급국그룹), MTCR(미사일기술통제체제), AG(호주그룹)
⇒ 우리나라는 '01년 4대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

**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,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및 기술

**< 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 개선 >**

○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**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** 등에 요구하던 **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**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.

□ 금번 고시 개정안은 **행정예고**(2.24~3.16) **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**될 예정이며, 시행 전 **우리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**을 돕기 위해 **다양한 지원**을 할 계획이다.

○ **'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'**(3월 중순)를 개최하여 **'對러/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'**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전략물자관리원 내 **수출통제 데스크*** 운영을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**상담서비스**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.

* **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데스크 연락처** : ☎ 02 - 6000 - 6496~9

【붙 임】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# 붙임 :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

※ 참고 : '04~'22년 기간 총 30차례 개정

### 1 수출통제 품목 추가

○ **(對러 상황허가 품목)**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확대 공조 차원에서 여타 동조국의 통제 대상 품목 중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**통제품목 57개⇒798개 확대** <개정안 별표2-2>

**[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]**

| 개정 전 57개 | 개정 후 798개 |
|---|---|
| (현재) 전자, 조선 등 57개 | (좌동) 전자, 조선 등 57개<br>(신규) 산업기계(공작기계, 베어링, 열교환기 등), 석유가스 정제장비, 자동차 및 부품(완성차는 5만 US$ 초과),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, 스텐리스 등 일부 철강제품, 다이오드·트랜지스터 등 일부 전자부품, 양자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741개 |

○ **(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)** '22년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의결된 통제품목 개정안 **215건* 반영**(매년 1회 정례 반영)
<개정안 별표2, 3>

* WA 192건(방사청 7건 포함), NSG 2건, MTCR 7건, AG 14건

### 2 무역거래자 편의 제고

○ **(서류 경감)** 인공위성의 해외 위탁발사를 위한 수출허가 신청시 **해외 위탁발사업체**(최종수하인)**를 최종사용자로 간주**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'**최종사용자서약서**' **제출을 면제**
<제19조 4항>

⇒ **인공위성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위탁발사만 대행하는 업체**에 대해 '**최종사용자서약서**'**를 징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** 규정 정비



○ **(허가면제 요건 완화)** 검사·시험 등 목적의 **전략물자 수출 후 재반입 및 폐기 기한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**
<제26조 1항 15호>

⇒ 검사·시험 후 **1년 내 재반입 또는 현지 폐기를 조건**으로 허가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**해외 유사입법례*와 비교시 짧은 기간에 해당**하는 바, 실제 연구 현실을 고려하여 반영

* 미국 EAR 740.9 : 1년 내 재반입 또는 현지 폐기를 조건으로 할 경우 허가를 면제하고, 이후에도 허가면제의 연장(4년) 및 수출허가 발급으로의 전환 등 허용

### 3 기타

○ **(상황허가 관련)** AA등급 이상 CP기업에 대해 상황허가 대상기술 자가판정 권한 부여(기존 전략기술 자가판정만 가능)
<제12조 3항 1호>

○ **(서식 정정)** '최종수하인진술서'<별지2>, '수출거래보고서'<별지16>, '수입목적확인서 관인'<별표18> 서식상 영문 오류 등 정정

○ **(용어 수정)** '별표2의2 품목'을 '별표2의2 물품등'으로 수정<제50조 3항 2호>, '수출허가'를 '상황허가'로 수정<제50조 3항 3호>